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
희망을 잇다, 삶을 잇다. 주거복지 로드맵		배포일시	2018. 4. 30(월) / 총 2매(본문 1)
담당 부서	주택건설공급과	담 당 자	·과장 이유리, 서기관 정진기, 주무관 노운용 ·☎ (044) 201-3382, 3380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공정위 ‘아파트 감사’ 회계사회 檢 고발 논란 관련

-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·운영 중으로,
  - 공동주택 관리비리 감소와 투명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다만, 최소감사시간 가이드라인 제시는 국토부가 요청한 바는 없으며,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(‘15.1.1.)한 사항입니다.
  - 이에 대해, 우리부는 감사 시간·비용은 단지 규모, 최초 감사인지 여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통보하였고,
  - 이에 따라, 회계사회에서 당초 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회원사에 정정하여 배포(‘15.4.20.)한 바 있습니다.
- 국토교통부는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,
  - 실태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내실 있는 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〈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도 현황 〉

- (제도 개요)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집행 등 회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를 매년 회계법인 등 외부 감사인이 감사
  - \*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 목적으로 '15.1.1부터 시행중
- (감사 대상) 300세대\* 이상 분양주택('16년 회계연도 기준 9,317개 단지)
  - \* 입주자들의 1/10 이상 연서 또는 입대의 요구시 300세대 미만도 가능

< 관련 보도내용 (4.30, 매일경제, 한국경제, 한국일보 등)

- ◆ 공정위는 아파트 회계감사 가격경쟁을 제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제제 (시정명령, 과징금, 형사고발)
  - 회계사회의 최소감사시간 가이드라인 제시는 국토부 요청사항임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정진기 서기관(☎ 044-201-33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